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2369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현수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지분에 관하여 2017. 10. 2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85,71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E가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7617호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21. 4. 16. ‘D 등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5,993,309원과 그 중 66,107,442원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D은 10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어머니 F의 소유였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2. 2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D 등 6인의 자녀와 3인의 대습상속인(앞서 사망한 3남 G의 처와 자녀들)이 있었다.
-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0. 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었던 1994. 7. 26.자 H단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4. 2. 23.자 I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7. 11. 8.과 2018. 1. 24.에 각 말소되었다.
- 4) 위 분할협의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170,000,000원이다.

다. D의 무자력

위 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1/7)을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상속 지분의 가액상당액인 24,28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것이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2017. 10.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원인이 2010. 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1))의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일자는 2017. 10.이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위 처분문서의 기재와 같이 2017. 10.경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J과 K 사이의 2015. 4. 7.자 여신거래약정 당시 D이 연대보증한 것에 기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그 후인 2017. 10.경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였던 D이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7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망인의 막내아들로 1993. 11.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온 점, ② 망인 사망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2010.부터의 재산세를 납부하며 이를 유지관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부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3. 2. 27.경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로 현재까지도 일반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④ 이에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2017. 10.경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작성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⑤ 위

분할협의 당시 D만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피고의 여생을 위하여 뜻을 모은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로명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지층 55.1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55.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67.3㎡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7.3분의 15.3

(이 중 의 상속 지분 전부)

1)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등기예규 제1675호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